

3.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,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,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얻기 위해 “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기능을

1. 취수 및 생산·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
2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3.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
4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
5.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 하고

- 위원은 시의원,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
(안 제3조)

□ 검토의견

-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등의 자문을 하게 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과 시의회의원,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공무원의 대상이 불분명한 실정에 있어 향후 의원님들이 동 위원회에 참여시 위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.